

## <별표 1> 재화별 품질보증기간 및 부품보유기간

※ 부품보유기간의 기산 : 해당 재화의 제조일자(제조연도 또는 제조연월만 기재된 경우 제조연도 또는 제조월의 말일을 제조일자로 봄)를 기산점으로 한다. 다만, 자동차는 동일한 형식의 자동차를 최종 판매한 날부터 기산한다.

품 목	품 질 보 증 기 간	부 품 보 유 기 간
1. 자동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차체 및 일반부품* : 2년 이내. 다만, 주행거리가 4만km를 초과한 경우에는 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함.</li> <li>* 차량 출고 시 장착된 내장형 내비게이션을 포함함.</li> <li>◦ 원동기(엔진) 및 동력전달장치: 3년 이내. 다만, 주행거리가 6만km를 초과한 경우에는 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함.</li> <li>◦ 외관 [후드, 도어, 필터, 휠더, 트렁크리드(테일게이트), 도어사이드실, 루프] 관통부식 : 5년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8년(단, 성능·품질 상 하자가 없는 범위 내에서 유사부품 사용가능)</li> </ul>
2. 모터사이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1년 이내. 다만, 주행거리가 1만km를 초과한 경우에는 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함.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7년(단, 성능·품질 상 하자가 없는 범위에서 유사부품 사용가능)</li> </ul>
3. 보일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2년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8년</li> </ul>
4. 농·어업용기기 1) 농업용기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원동기 및 동력전달장치 : 2년 단, 주행거리가 5천km 또는 사용시간이 총 1천 시간(콤바인의 경우에는 400시간)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함.</li> <li>◦ 기타 장치 : 1년 단, 주행거리가 2천500km 또는 사용시간이 총 500시간(콤바인의 경우에는 200시간)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함.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9~14년 (농업용기기에 따라 내용연수 포함하여 4년까지 생산·공급. 다만, 성능 품질 상 하자가 없는 범위 내에서 유사부품 사용 가능)</li> </ul>
2) 어업용기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1년</li> </ul>	

품 목	품 질 보 증 기 간	부품 보유 기간
5. 가전제품, 사무용기기, 전기통신기자재, 광학기기, 주방용품 등		
1) 완제품 - 에어컨	◦ 2년	◦ 8년
- 시스템에어컨	◦ 1년	◦ 8년
- 난로(전기, 가스, 기름), 선풍기, 냉풍기, 전기장판	◦ 2년	◦ 5년
- TV, 냉장고	◦ 1년	◦ 9년
- 전축, 전자레인지, 정수기, 가습기, 체습기, 전기청소기	◦ 1년	◦ 7년
- 세탁기	◦ 1년	◦ 7년
- 비디오플레이어, DVD플레이어, 전기(가스)오븐, 비데, 전기압력밥솥, 가스레인지, 유·무선전화기, 믹서기, 전기온수기, 냉온수기, 캠코더, 홈시어터, 안마의자, 족욕기, 망원경, 현미경	◦ 1년	◦ 6년
- 네비게이션, 카메라, 디지털피아노	◦ 1년	◦ 5년
- 데스크탑(완성품) 및 주변기기, 노트북, 태블릿, 휴대용 음향기기(MP3, 카세트, CD플레이어)	◦ 1년	◦ 4년
- 스마트폰, 휴대폰	◦ 2년(단, 배터리는 1년)	◦ 4년
- 전기면도기, 전기조리기기 (멀티쿠커, 튀김기, 다용도식품조리기, 전기토스터, 전기냄비, 전기프라이팬 등), 헤어드라이어	◦ 1년	◦ 3년
- 복사기	◦ 6개월 다만, 복사 매수가 복사기종에 따라 각각 3만매 (소형), 6만매(중형), 9만매(대형)를 초과한 경우에는 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함.	◦ 5년
- 신발	◦ 가죽제품(가죽이 전체 재질의 60% 이상): 1년 ◦ 천 등 그 외의 소재: 6개월	

품 목	품 질 보 증 기 간	부품 보유 기간
- 라켓(테니스, 탁구, 배드민턴 등) 몸체 (라켓에 부착된 라바 또는 끈 등 제외)	◦ 6개월	◦ 1년
- 헬스기구, 골프채	◦ 1년	◦ 5년
- 우산류	◦ 1개월	
- 전구류	◦ 1개월(형광등, 백열전구) ◦ 6개월(LED전구)	
- 문구	◦ 6개월	◦ 1년
- 완구	◦ 6개월	◦ 1년
- 가발	◦ 6개월(인모) ◦ 1년(인공모)	
2) 핵심부품	◦ 핵심부품 품질보증기간내 정상적인 사용상 태하에서 발생한 성능·기능상의 하자로 부품 수리가 필요한 경우 - 핵심부품에 대한 무상수리	
- 에어컨 : 컴프레서	◦ 4년	
- LCD TV, LCD 모니터(단, LCD 노트북 모니터는 제외), LCD모니터·본체 일체 형 PC : LCD 패널	◦ 2년(단, 소비자가 확인 가능한 타이머가 부 착된 제품으로 5,000시간을 초과한 경 우에는 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함.)	
- PDP TV 패널	◦ 2년(단, 소비자가 확인 가능한 타이머가 부착된 제품으로 5,000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함.)	
- LED TV, LED 모니터(단, LED 노트 북 모니터는 제외), LED모니터·본체 일체형 PC : LED 패널	◦ 2년(단, 소비자가 확인 가능한 타이머가 부착된 제품으로 5,000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함.)	
- 세탁기 : 모터, TV : CPT, 냉장고 : 컴프레서, 모니터 : CDT, 전자렌 지 : 마그네트론, VTR : 헤드드럼, 비 디오카메라 : 헤드드럼, 팬히터 : 버너, 로터리히터 : 버너	◦ 3년(단, 모니터용 CDT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확인 가능한 타이머가 부착된 제품으로서 10,000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간이 만 료된 것으로 함.)	
- 데스크탑, 노트북 : Main Board	◦ 2년	
6. 별도의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		
1) 유사품목에 떠를 수 있는 경우	◦ 유사품목에 따름	◦ 유사품목에 따름
2) 유사품목에 떠를 수 없는 경우	◦ 1년	◦ 해당 품목의 생산을 중단한 때부터 기 산하여 5년